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7호, 2026. 1. 27. 공포, 2. 28. 시행)됨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2명)을 증원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신설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되, 그에 해당하는 인력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토교통부에서 이체받으며,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2. 13. ~ 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제3장의4(제19조의10 및 제19조의1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4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제19조의10(상임위원) 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

- 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9조의11(사무국) 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5와 같다.

⑪ 제10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2조의2 중 “별표 2의5와”를 “별표 2의6과”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 11 다음에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주사 12 다음에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항공주사·방재안전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를 신설하고,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 5”를 삭제한다.

별표 2의5를 별표 2의6으로 하고, 별표 2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00000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공무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이체받는다.

[별표 2의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0항 관련)

총계	13
일반직 계	13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2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사무관	1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항공사무관	1
항공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항공주사	1
행정주사·공업주사·항공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항공주사	2
행정서기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소속기관)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조(소속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둔다.</u>
<u><신 설></u>	<u>제3장의4</u> <u>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u>
<u><신 설></u>	<u>제19조의10(상임위원) ①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2명으로 한다.</u> <u>②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u>
<u><신 설></u>	<u>제19조의11(사무국) ①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u>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생략) <u><신설></u> <u><신설></u> 제22조의2(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u>법률」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u> <u>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4급으로 보한다.</u> <u>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 제2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⑨ (현행과 같음) <u>⑩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5와 같다.</u> <u>⑪ 제10항 및 별표 2의5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의 정원 중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22조의2(평가대상 조직) ----- ----- ----- -----
---	--

평가대상 조직은 <u>별표 2의5와</u> 같다.	----- <u>별표 2의6과</u> -----.
--------------------------------	--------------------------------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	· · 11	· ·	
<u>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 주사 · 방송통신주사 · 항 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 는 기록연구사</u>	<u><신 설></u>	<u>5</u>	+5
<u>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 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기록연구사</u>	<u>5</u>	<u><삭 제></u>	-5
·	·	·	
·	·	·	

[별표 1의2]

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 12	• •	• •	
<u>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u> <u>주사 · 방송통신주사 · 항</u> <u>공주사 · 방재안전주사 또</u> <u>는 기록연구사</u>	<신 설>	5	+5
<u>행정주사 · 시설주사 · 전산</u> <u>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u> <u>기록연구사</u>	5	<삭 제>	-5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2318